

'20년 경찰공무원(경정, 경감) 정기 승진시험

- 2교시(11:30 ~ 12:50) -

목 차

【 형 사 소 송 법(경정) 】 ----- 1

【 경 찰 행 정 법(경감) 】 ----- 2

응시자 유의사항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경 찰 청

사이버경찰청 : <http://www.police.go.kr>

원서접수사이트 : <http://gosi.police.go.kr>

과목 : 형사소송법(경정)

답안 작성시 문제는 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문제 I]

친구 관계인 甲과 乙은 공모하여 편의점에서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한 후 각자 도주하였는데, 도주하던 甲은 출동한 사법경찰관 A에게 현행범 체포되었다.

사법경찰관 A는 甲에게 실수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말고도 다른 범행이 있으면 지금 말하는 것이 너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고, 甲은 A에게 ‘오토바이를 훔친 적이 있다’고 자백하였다(1차 진술). 그리고 40여 일이 지난 후 자발적으로 사법경찰관 A를 찾아온 甲은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 B가 참여한 피의자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오토바이를 훔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백하였다(2차 진술).

한편, 乙은 사법경찰관 A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범행을 부인하였고 사법경찰관 A는 乙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편의점을 방문하였다. 건너편 건물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한 사법경찰관 A는 편의점 앞에서 乙이 망을 보고 있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찾아냈고,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그 부분 동영상 파일을 자신의 USB 메모리에 복사한 후 이를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하였다.

결국 甲과 乙은 사법경찰관 A에게 편의점에서 10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공동으로 기소되었는데,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甲과 달리 乙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다.

※ 전체 논점정리와 결론은 별도로 쓰지 말고, 각 문항별로 답안을 작성할 것

1. ‘오토바이를 훔친 적이 있다’는 내용의 甲의 ‘1차 진술’의 증거능력과 ‘2차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각각 논하시오. (20점)
2. 만약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 당시 참여한 변호인 B가 기억을 환기하기 위하여 메모를 하고 있었는데 사법경찰관 A가 이를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경우, 사법경찰관 A의 변호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 참여 제한은 적법한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구제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논하시오. (8점)
3. 사법경찰관 A가 CCTV 영상을 압수하는 과정이 적법한지 논하시오(단, 증거능력은 논외로 한다). (10점)
4. 사법경찰관 A가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乙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乙이 편의점에서 10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증언하였고, “甲도 편의점에서 乙과 함께 10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증언하는 경우, 이러한 사법경찰관 A의 증언은 각각 증거능력이 있는가? (12점)

[문제 II] 다음을 약술하시오.

1. 공소시효 (30점)
2. 무죄추정의 원칙 (20점)

과목 : 경찰행정법(경감)

답안 작성시 문제는 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문제 I]

甲은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생과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차량 뒤에 주차한 다른 차량의 진로를 열어주기 위하여 음주 상태에서 약 15m 정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甲이 운전한 도로는 주점 사장이 국도로 진입하기 위해 개설한 사설 도로였다. 때마침 관할 지구대 경찰관 乙이 순찰 중 이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甲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甲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음날 甲은 A시에 위치한 도로를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가로수를 충돌하여 쓰러뜨리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가로수로 인해 주변 도로의 통행이 방해되었다. 한편, 경찰관 乙은 도주한 甲을 발견하기 위해 112 순찰 차량으로 인근을 순찰하던 중 사적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택시기사 丙이 운행하는 차량을 추돌하였다. 이로 인해 丙은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 전체 논점정리와 결론은 별도로 쓰지 말고, 각 문항별로 답안을 작성할 것

1.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甲에 대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하자, 甲이 “경찰관은 사설 도로상에서 음주측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할 경우, 甲의 주장이 경찰권 행사의 한계라는 관점에서 타당한지 검토하시오. (12점)
2. 관할 경찰서장 B가 교통상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청인 A시의 시장에게 도로에 쓰러진 가로수를 제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15점)
3. 丙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인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찰관 乙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23점)

[문제 II] 다음을 약술하시오.

1.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30점)
2. 공무수탁사인 (20점)

<참고조문>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通行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애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